

의안번호	2203828
의 퇴 인	박은정의원
회 답 일	2024.11.1.
추계번호	24D3660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비고
1	안 제14조의4(응급조치) 신설	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 차단 요청,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, 피해 신고·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(단,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)를 해야함	의무규정
2	안 제22조의2(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) 및 제22조의9(수사 지원 및 교육) 신설	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(정보통신망 포함)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(이하 “신분비공개수사”라 함)할 수 있으며,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지원을 해야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의4(응급조치) 신설	미대상: 기존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- 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시스템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종합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 예산(6억 5,000만원)이 2024년 여성가족부에 편성 -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(12억 2,800백만원),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(1억 8,500만원) 등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예산(14억 4,300백만원)이 2024년 여성가족부에 편성 - 온라인 성착취 정황 발견 시 상담·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불법 촬영물이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삭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성착취 상담 채널 개설·운영 예산(2억 6,500만원)이 2024년 여성가족부에 편성
2	안 제22조의2(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) 및 제22조의9(수사 지원 및 교육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지원 및 교육(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9)

- 개정안에 따라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지원을 하고,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건수를 예측할 수 없고, 수사에 수반되는 인적·물적 지원 규모와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아동·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위장수사팀이 있고, 아동·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신분위장수사의 물적 지원 및 교육 예산으로 2024년 기준 1억 5,2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